

# 위험물 사고 예방 수칙



## 1. 선임된 취급자만 위험물 취급

- 위험물 취급은 반드시 선임된 취급자(관리자)의 관리하에 실시



## 2. 위험물이 인접한 곳에서 용접이나 용단작업은 절대 금지

- 불티의 비산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가능



## 3. 위험물 저장소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 취급하지 않기

-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은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음



## 4. 위험물 집합 장소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

- 가스 체류 시 화재 위험 및 작업자 중독 사고 발생 가능



## 5. 위험물과 일반 물품을 혼재하여 저장 및 보관하지 않기

- 법령에 의한 혼재 명시 및 가능한 물품끼리 보관

# 스스로 진단하기

## Check List



- 위험물이 인접한 곳에서 화기를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?



-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?



- 위험물 취급 장소에 임의의 작업자가 출입하지는 않나요?



- 인화성 유류가 누유, 누수되고 있지는 않나요?



- 위험물 저장장소가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인가요?



- 위험물 인접 장소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하지는 않나요?



- 위험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나요?



- 위험물 인접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는 않나요?

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

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

# 위험물 화재



# 위험물 알아보기

## 위험물이란?(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)

-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

구분	명칭	대표 성질
제1류 위험물	산화성 고체 (브롬산 염류 등)	
제2류 위험물	가연성 고체 (마그네슘 등)	
제3류 위험물	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(나트륨 등)	
제4류 위험물	인화성 액체 (석유류 등)	
제5류 위험물	자기반응성 물질 (질산에스테르 등)	
제6류 위험물	산화성 액체 (과산화 수소 등)	

# 사고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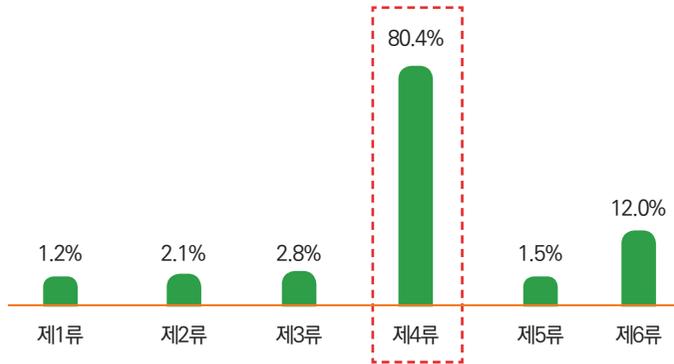
## 화성시 의약품 원료 제조공장 폭발(화재)사고

일시	'22년 9월 30일 14시경	
피해현황	사망 1, 중상 4, 경상 11	
사건개요	제조공정 반응기에서 아세톤 및 혼합물이 누출되어 폭발	

# 현황 및 주요 원인

## 전국 위험물 사고 통계(최근 5년간, '17~'21년)

### “제4류 위험물(석유류)”에서 압도적 발생



- 제4류 위험물(석유류)에서 위험물 사고 80.4% 발생
- 사고 유형은 화재(44.2%) > 누출(28.4%) > 폭발(25.4%) 순

# 위험물 화재 위험성



- 연소될 때 발열량(나무 발열량에 비해 2배 이상)이 높아 화재 확대 위험성 높음



- 유독가스(탄화수소 등)를 흡입하면 화학성 폐렴 등과 같은 심각한 증상 발생



-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낮은 인화점에서 폭발 가능

# 국민행동요령



- 신속하게 대피하기
  -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물수건 등을 사용해서 흡입 차단
- 119 신고 및 주변에 알리기
  - 신고 시 위험물의 종류, 공장 용도 알리기



-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열 흡입방지를 위해 두 손으로 얼굴 감싸기
  - 이동을 멈추고 바닥에 몸을 좌·우로 뒹굴어 불을 끄기



- 유류 화재 초기 소화시 B급 소화기(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) 사용
  - ※ 석유류나 페인트 화재는 물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금지



- 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 안전거리 확보